

변리사스쿨 7월 월말모의고사 정오표

과목	번호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산업재산권법	24	정답	③	②
	32	정답	②	②, ③

산업재산권법 이의신청 내용

[24번] Q. 해설지에 24번 정답이 3번으로 나와있는데 문제의 선지 내용과 해설을 읽어보면 정답이 2번인데 표기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답변) 정답은 ②입니다.

[32번] Q. 3번 선지에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법 제99조에 따른 선사용권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상표법에서 99조 선사용권자는 99조 1항의 선사용권자와 99조 2항의 선사용권자가 있는데 상표법 제99조 3항에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으며 2024년 시행된 제61회 변리사 1차 시험 산업재산권법 30번 문제에서 2번 선지가 "상표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제2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있었는데 맞는 선지로 나왔음.

따라서 "99조에 따른 선사용권자"라는 표현은 99조 1항 선사용권자와 99조 2항의 선사용권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틀린 선지로 볼 여지가 있어 복수정답 요청합니다!

답변) ②, ③ 복수정답.

**** 이번 7월 모의고사 24번 지문에 지난 6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7월 모의고사에서 출제 예정이던 문제를 참고하시도록 올려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24.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특허청에 2020년 5월 6일 특허출원 A를 하고 특허출원 A를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해 2021년 3월 3일 미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영어로 국제특허출원 B를 하고 2022년 3월 3일 한국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 B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한국특허청에서 심사청구일은 2024년 3월 3일까지이다.
- ②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이 그 번역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국제특허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
- ③ 출원인이 PCT 19조 또는 PCT 34조에 따라 청구범위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④ 국내서면제출기간(연장된 경우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내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에 대한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간주된다.
- ⑤ 미국특허청에 특허협력조약에 의해 영어로 국제특허출원을 한 경우 출원인은 한국특허청에 특허법 제201조에서 규정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낸 후 그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 ① 2021년 3월 3일이 출원일이므로, 출원일부터 3년을 계산하면 2024년 3월 3일이다.
- ② 번역문 제출에는 명세서, 도면의 보정효과가 부여되며, 명세서, 도면의 보정이 최초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항을 추가한 경우는 특허법 제47조 제2항 전단에 위배되고, 이는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 ③ PCT 19조 보정만 가능하고, PCT 34조 보정은 대체하여 제출할 수 없다(특허법 제201조 제2항).
- ④ 특허법 제201조 제3항을 보면 국내서면제출기간이란 국내서면제출기간 또는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법 제201조 제4항은 위 기간에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제특허출원을 취하간주한다고 규정한다.
- ⑤ 특허법 제210조 제1호.